

# 『2024년 파주시 시민안전 보험』 혜택 안내문

## ◆ 보험계약현황

- 피보험자 :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 (등록된 외국인포함)
  - 보험기간 : 2024년 1월1일 (00:00) ~ 2024년 12월31일 (24:00) (1년)
  - 보험료 : 파주시에에서 일괄납부완료
  - 가입절차 : 파주시 시민 전체 자동가입완료
- ※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보험기간중 해당사고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 ◆ 보험계약담보

구 분	보 상 내 용	보상금액
상해사망 (교통상해 제외)	파주시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교통상해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500만원
사회재난사망 (감염병 제외)	파주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500만원
사회재난 후유장해 (감염병 제외)	파주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500만원한도
자연재해사망 (일사병, 열사병포함)	파주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500만원
자연재해후유장해 (일사병, 열사병포함)	파주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500만원 한도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파주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5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후유장해	파주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500만원 한도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 (전세버스포함)	파주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500만원
대중교통이용중 상해후유장해 (전세버스포함)	파주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500만원 한도

구 분	보 상 내 용	보 상 금 액
농기계사고 사망	파주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파주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한도
헌혈후유증 보상금	파주시민이 헌혈에 참여하여 그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만원
화상수술비	파주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만원 (수술 1회당/심재성2도이상)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파주시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3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파주시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한도 (1급~14급/부상등급기준에 따른 지급기준적용)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파주시민 만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 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500만원 한도 (1급~10급/부상등급기준에 따른 지급기준적용)

### ◆ 보장내용

#### ○ 상해 사망(교통상해 제외)

- ▶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

#### ■ 교통상해 사고 : 보장 제외

- ▶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았을 때, 운행 중의 교통수단(적재물 포함)과의 충돌·접촉 또는 이들 교통수단의 충돌·접촉·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
- ▶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
- ▶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모든 교통수단으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

#### ※ 교통수단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 자동차(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 기차, 전동차, 기동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 포함), 리프트, 모노레일
-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 포함)
- 건설기계,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음)

※ 기존 물놀이사고사망·유독성물질사망은 상해사망(교통상해 제외)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사회재난 사망 / 후유장해 (감염병 제외)**

-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 /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나목에서 정의된 사회재난을 말함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에 의한 사망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 **자연재해 사망 / 후유장해 (일사병, 열사병 포함)**

- ▶ 국내에서 발생한 자연재해로 인하여 사망 /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자연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3조 제1호 가목)의 정의 :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 ※ 열사병 및 일사병 :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T67.0 (열사병 및 일사병)에 해당하는 경우
  - 자연재해라 함은“자연재난”과“열사병 및 일사병”을 말함
- ※ 자연재난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사고는?**
  - 폭발,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사고
  - ※ 가스 폭발, 가스레인지 폭발 등 우연히 일어난 사고
  -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 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 침강 또는 사태사고
  - ※ **붕괴**란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또는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말함.  
단, 균열 또는 파손에 의해 일부가 떨어지는 것은 붕괴로 보지 않음.
  - ※ **침강**이란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또는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내려앉는 것을 말함.
  - ※ **산사태**란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미함.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라 함은?
  - 운행 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 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승강장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수단을 말함.

1. 여객수송용 항공기
2.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기차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전세버스 포함)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5. 여객수송용 선박

####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후유장해

- ▶ 보험기간 중에「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 ▶ 보험기간 중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후유장해보험금

※ 농기계라 함은「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별표 1 (농업기계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계를 말함.

#### ○ 헌혈후유증 보상금

- ▶ 보험기간 내에 대한 적십자사 산하 혈액원에서 주관하는 헌혈에 참여하여 그 후유증으로 인해 대한적십자사의「헌혈후유증 판정위원회」에서 헌혈후유증으로 판정, 치료를 받은 경우

※ 단순 어지럼증, 빈혈, 쇼크로 인하여 헌혈장소에서 영양제 투여 등의 단순처치를 받은 경우는 보상 제외

#### ○ 화상수술비

- ▶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화상 분류표\*에 정한 화상(심재성2도)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 을 받는 때에는 수술 1회당 화상수술비 지급

#### ○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 ▶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써「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개 물림사고"라 함은 들개, 유기견, 반려견 등에 대한 구분 없이 모든 종류의 개에 의한 물림사고를 말함.

- 「응급실」이라 함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정하는 응급의료기관(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2(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정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된 응급실을 말합니다.

다만, 관련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함.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6항』에 의하여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 한 지역 내에서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 배상보상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 1급~14급)을 받은 경우에는 부상등급에 따라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를 지급함.

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2.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 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3. 운행 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 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 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함.

※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 (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이하9종 건설기계"라 함)를 말함. 다만, 9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음.

**<스쿨존 부상등급별 지급기준>**

부상등급	가입금액	부상등급	가입금액	부상등급	가입금액
1급	1,000만원	2급	500만원	3급	400만원
4급	300만원	5급	300만원	6급	200만원
7급	150만원	8급	100만원	9급	80만원
10급	60만원	11급	50만원	12급	40만원
13급	20만원	14급	10만원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65세 이상인자가 보험기간 중에『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6항』에 의하여 시장 등이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 보상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 1급~10급)을 받은 경우에는 부상등급에 따라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를 지급함.

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2.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 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3. 운행 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 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함.

※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이하9종 건설기계"라 함)를 말함. 다만, 9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음.

**<실버존 부상등급별 지급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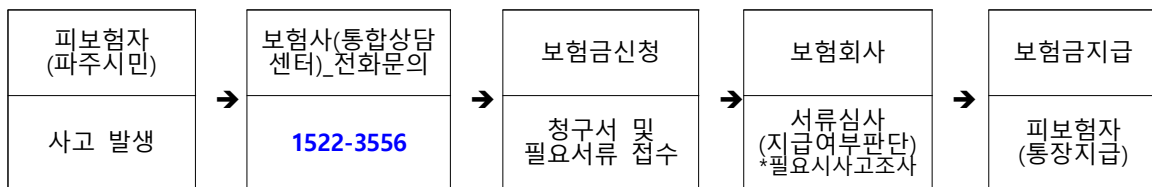
부상등급	가입금액	부상등급	가입금액
1급	500만원	2급	450만원
3급	400만원	4급	350만원
5급	300만원	6급	250만원
7급	200만원	8급	150만원
9급	100만원	10급	50만원

**◆ 보험금청구**

○ 청구사유 발생시 보험사(상담 및 접수처)에 문의

1.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2. 기타필요서류 : 시민안전보험 통합 상담센터에 문의바랍니다.

※ 보험금청구 및 지급절차



※ 문의 : 시민안전보험 상담 및 접수처(디비손해보험 컨소시엄)

☎ 1522-3556

FAX. 0507-774-0662

## ◆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요 서류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요 서류	
공통서류	① 보험금 청구서 ②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위임해주시는 분들도 작성 필요합니다) ③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④ 통장사본 ⑤ 신분증사본 ⑥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사망	① 공통서류 ②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③ 사고사실확인서 및 사건종결확인서(경찰서 또는 소방서) (자연재난, 사회재난사고 사망시 : 공공기관 사고조사자료) ④ 그 외 보험금 상속관련 서류(사망자기준 상세) ( 말소자 등.초본,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위임장(필요시))
후유장해	① 공통서류 ② 후유장해 진단서 (AMA식 장해평가. 장해율 %) ③ 사고사실확인서 (사고 경위에 따라 기관으로부터 사고 확인서 또는 추가 서류_요청 시) ※ 자연재해, 사회재난 후유장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 보고된 보고서
화상수술비	① 공통서류 ② 진단명(질병분류코드기재). 수술명. 수술일자포함된서류 (예:수술확인서. 수술기록지. 진단서등) ※ 진단서 발급시 : 진단명(질명분류코드명기),수술명, 수술일자포함
헌혈후유증 보상금	① 공통서류 ② 헌혈후유증 판정 및 치료 확인 서류 ③ 보험사 요청서류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진료비	① 공통서류 ② 개물림사고로 인한 응급실 내원진료확인서류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① 공통서류 ②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경찰서 사고확인서) ③ 보험회사 지급결의서(부상등급기재) 또는 진단서

※ 보상서류 접수후 보상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필요시 추가서류를 요청할수 있습니다.

## ◆ 사고접수 및 보상관련 상담문의

- 청구사유 발생 시 상기 공통서류 및 지급 사유별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아래 접수센터로 연락바랍니다.
-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 접수처 (보험사 통합상담센터)**

- 전화문의 : 1522-3556

- 팩스 : 0507-774-0662